

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2. 1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2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2월 1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2. 18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김 윤 수)

가. 제안이유

최근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암표지자검사 수수료 신설 (안 별표 제4호 다항)
- 검사수수료는 건당 9,000원으로 정함 (안 별표 제4호 다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